

수원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9나5220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9나52201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12. 28 선고 2018가단57936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로 담당변호사 김기범

피고,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9. 7. 11

판결선 고 2019. 8. 22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12. 28. 선고 2018가단5793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주위적으로,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26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. 10. 11. 접수 제96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예비적으로,피고는 원고에게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(1)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변경 본연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중요한 서류 가 있음을 사전에 K와 함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,개발행위 자체가 불가함을 고지하지 않았으며,주민 민원으로 건축행위불가 가능성이 높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.

(2) 이 사건 특약은 단순히 건축허가명의를 변경·승계하여 주는 것을 넘어 실제 원고가 건축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하거나 건축 관련 행정신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개발행위 허가에 협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,피고는 이러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.

또한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.

(3)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증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피고가 F, G 각 토지에 대한 상하수도 설치공사가 가능하도록 I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토지사용을 해당 목적 하에 승낙하도록 해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,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.

또한 원고는 이러한 의미로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유 발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제1심 판결 이유에서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'기존 건축허가명의 변경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승계하여 준다.

'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, 그 후 원고가 주장하는 F, G 각 토지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원고 앞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특약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,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 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 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 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정중판사 강두레판사 정덕수